

2020고합128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의 의견서(1)(2) 제출 개요

1. 피고인 현황

- 피고인 조형곤(전 목포해양경찰서 경비구난과 상당담당관)
- 피고인 김문홍(전 목포해양경찰서장)
- 피고인 유연식(전 서해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 상황담당관)
- 피고인 김정식(전 서해지방경찰청 경비안전과장)
- 피고인 김수현(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 피고인 임근조(전 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
- 피고인 여인태(전 해양경찰청 경비과장)
- 피고인 이춘재(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 피고인 최상환(전 해양경찰청 차장)
- 피고인 김석균(전 해양경찰청장)

2. 피고인들의 법령상의 임무와 매뉴얼상의 임무

- (1) 경찰관직무집행법, 구 수난구조법 등에 따라 해양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 (2) 주변해역 대형 해상사고 대응 매뉴얼, 해양수색구조 매뉴얼에 따라 구조본부 등 대응기관은 구조합정을 사고 발생 해역으로 이동조치하는 등 **초동조치 실시 의무**, 사고 발생 일시·장소와 경과 시간, 선박의 종류와 톤수, 승선원(여객과 승무원), 구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남·여·노·소 등), 구조정 이용 탈출자, 구명의 착용 여부 등 **사고현장 상황 파악 의무**, 구조세력, 구조방법, 구조 난이도, 위험성, 소요 장비 등을 고려하여 **구조계획 수립의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색과 구조 활동 실시의무**

3. 피고들의 구체적인 주의의무와 위반

- 피고인 조형곤(전 목포해양경찰서 경비구난과 상당담당관)

- (1) 목포해양경찰서 상황담당관 피고인 조형곤은 신속하게 구조대응 상황을 분석·판

단하고 구조대응 상황에 따른 지휘 조정·통제되도록 보좌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직속 상관인 3009함에 승선한 현장지휘 역할을 맡았던 피고인 김문홍에게 B511 헬기 구조사를 통해 선내진입 지시 또는 퇴선명령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거나 또는 123정장 현장 도착 후 선내진입 지시 또는 퇴선명령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 등 보좌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 (2) 119 상황실로부터 **당일 08:58경** “배가 기울어 사람도 바다에 빠졌다고 합니다”, **09:19** “다리 부상 학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9:26** “환자도 다수 있다고 추가 신고가 들어오고 있어요” 라는 정보를 받고 있었는데도 신고자의 연락처를 물어 추가적인 세월호 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
- (3) **당일 09:04경** 세월호 여객부 선원 강혜성이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122)에 “배가 기울어져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 “지금 저희 배가 40도, 45도 지금 기울어서 도무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안돼요” “지금 저희가 움직일 수 있으면 상황 파악을 하겠는데, 움직일 수 없어요. 지금 배가 45도 정도 기울어 있어서, 지금” 이라고 알렸는데, 위 정보에 따라 구조대응 상황을 분석·판단을 하여 현장으로 출동하는 123정에 전파하여 현장 도착 즉시 탈출방송, 선내진입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휘할 수 있도록 보좌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 (4) 세월호는 **당일 09:26경, 09:28경** VHF 통신(156.8MHz FM 항무망 채널 16)로 해양경찰을 호출¹⁾ 하였는데,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의 상황담당관 피고인 조형곤은 응답하지 않았다. 만약, 이 시점에 세월호와 교실했다면, ① 다치거나, 사망한 승객이 있는지, ② 가장 구조가 시급한 승객이 누구이고 어디에 있는지, ③ 나머지 승객은 몇 명이고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 ④ 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⑤ 퇴선 준비 또는 퇴선지시가 내려져 승객들이 갑판 등 비상대피 장소에 나와 있거나 바다에 떠 있는 상태인지, ⑥ 어디로 접근해야 가장 신속하게 많은 승객을 구조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정보가 파악되어 적절한 조치가 가능했다.
- (5) **당일 09:28경** B511 헬기가 “배가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고 지금 대부분 선상, 선상과 배 안에 있음. 현재 45도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고, 승객들 대부분 선상과 배 안에 있음” 이라고 목포상황실에 보고되었을 때 상황담당관 피고인 조형

1) 세월호: “해양경찰, 여기는 세월호입니다. 감도 있습니까?”

곤이 신속하게 구조대응 상황을 분석·판단하고 구조대응 상황에 따른 지휘 조정·통제되도록 보좌업무를 수행했다면 구조 가능성이 있었을 것인데, 이를 하지 않았다.

□ 피고인 김문홍(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지역구조본부장)

- (1)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에 구조에 관하여 파악한 정보가 어떠한지 문의나 보고를 지시하지도 않았고, 3009함 경비 전화, TRS, 문자상황보고시스템, VHF 통신기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세월호와는 물론이고, 출동하고 있는 123정, 출동 항공 헬기 등과 교신을 시도하도록 지시하는 등 지역구조본부장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 (2) 당일 09:28경 B511 헬기가 TRS로 구조 활동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전파했지만, 123정, B511 헬기 등에서 전파하는 교신 내용을 듣고 있었는데도 구조대응 상황을 분석·판단하고 구조대응 상황에 따라 구조 활동이 신속하게 조정·통제하는 총괄 지휘 임무를 포기했다.

□ 피고인 유연식(전 서해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 상황담당관)

- (1)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의 출동 지시를 받고 세월호 사고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B511 헬기는 123정장과 교신하지 않고, 세월호와 교신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였다.
- (2) 당일 09:23경 진도VTS가 “① 선체가 한쪽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다. ② 승선 인원이 500명 정도이다. ③ 승객들에게 구명동의를 입고, 대기하라고 했으나 확인은 불가능한 상태다. ④ 배가 좌현으로 50도 이상 기울어져 이동이나 탈출이 어려워 승객들이 선실 내부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⑤ 선원들이 움직일 수 없어서 조타실에 모여있다.” 라는 매우 중요한 정보를 **광역구조본부(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의 상황담당관인 피고인 유연식에게 제공하면서 승객 비상 탈출 문의를 하였는데도, 선장에게 퇴선준비나 퇴선명령을 내리지도 않았고,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비상대기 갑판으로 탈출 대기 조치 또는 준비 조치를 직접 내려야 한다는 취지를 광역구조본부의 장인 피고인 김수현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보좌하지 않았다.
- (3) 당일 09:28경 B511 헬기가 TRS로 구조 활동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전파했고,

B511 헬기 등에서 전파하는 교신 내용을 TRS로 듣고 있었는데도 상황담당관인 피고인 유연식은 구조대응 상황을 분석·판단하고 구조대응 상황에 따라 구조 활동이 신속하게 조정·통제하는 총괄 지휘 임무를 제대로 보좌하지 않았다.

□ 피고인 김정식(전 서해지방경찰청 경비안전과장)

(1) 피고인 김정식은 앞에서 본 피고인 유연식과 동일한 의무를 위반하였다.

□ 피고인 김수현(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1) 당일 09:23경 진도VTS로부터 받은 정보, 당일 09:28경 B511 헬기가 TRS로 전파한 정보, 당일 09:34경 서해지방경찰청 상황실(해상안전과 안전계장 박남수)은 123정(기관장 최완식)과 경비 전화로 받은 정보에 따르면 123정 등 현장에 도착한 구조 세력에게 현장 도착 후 선내진입 지시 또는 퇴선명령이 가능하도록 현장지휘를 함이 적절하였다.

(2) 광역구조본부의 장으로서 현장지휘를 총괄 지휘 임무를 맡은 피고인 김수현은 B511 헬기 구조사를 통해 선내진입 지시 또는 퇴선명령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거나 또는 123정장 현장 도착 후 선내진입 지시 또는 퇴선명령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등 일사불란한 구조지휘를 하지 않았다.

□ 피고인 임근조(전 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

(1) 09:10경 중앙구조본부가 구성되었을 때 피고인 임근조는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 상황담당관으로서 세월호 사고로 구조 활동을 하는 때 중앙구조본부장인 피고인 김석균을 보좌하고, 상황실 지휘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인 임근조는 해양경찰청 본청상황실에 경비 전화, TRS, VHF 통신기기 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이 세월호, 123정, 출동하는 항공 헬기와 지속적으로 교신하고 있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교신을 시도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

(3) 당일 09:28경 B511 헬기가 각 구조본부(상황실)가 청취할 수 있는 TRS로 구조 활동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전파했는데도, 중앙구조본부의 장인 피고인 김석균이 총괄 지휘 임무를 맡은 사람으로서 B511 헬기 구조사를 통해 선내진입 지시 또는 퇴선명령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거나 또는 123정장 현장 도착 후 선내진입 지시 또는 퇴선명령 가능하도록 중앙조정관이자 상황반장으로서 종합상황

실 지휘·통제하는 피고인 이춘재에게, 또는 지휘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김석균에게 구조지휘 하도록 건의하는 등의 보좌할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 (4) 당일 09:36~38경(약 2분 20초) 중앙구조본부(해양경찰청 본청상황실)는 해양경찰청 본청상황실(김남진/여인태)과 123정장 김경일과 통화하여 세월호의 구조상황이 매우 긴급하므로 구조 세력(특히 123정장)에게 세월호 선내로 진입하도록 지시하거나, 또는 퇴선명령을 지시해야 할 상황이라는 판단이 가능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소인 임근조는 종합상황실 지휘·통제하는 피고인 이춘재에게 또는 지휘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김석균에게 구조지휘 하도록 건의하는 등의 보좌할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 피고인 여인태(전 해양경찰청 경비과장), □ 피고인 이춘재(전 해양경찰청 경비안 전국장), □ 피고인 최상환(전 해양경찰청 차장)

- (1) 해양경찰청 본청상황실에 경비 전화, TRS, VHF 통신기기 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이 세월호, 123정, 출동하는 항공 헬기와 지속적으로 교신하지 않는데도 계속적으로 교신을 시도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이를 확인하여 전파·공유되도록 하지 않았다.
- (2) 당일 09:36~38경(약 2분 20초) 경비 전화로, 당일 09:44~48경 123정장 김경일이 TRS로 세월호의 구조상황이 매우 긴급하므로 구조 세력(특히 123정장)에게 세월호 선내로 진입하도록 지시하거나, 또는 퇴선명령을 지시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다.
- (3) 이들은 “구조대응상황 분석 판단” 하여 중앙조정관이자 상황반장으로서 종합상황실을 총괄 보좌하는 피고인 이춘재에게, 또는 지휘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김석균에게 구조 헬기 세력의 항공 구조사에게 세월호 선내로 진입하도록 지시하여 퇴선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또는 123정에게 대공 마이크로 퇴선명령을 지시하도록 건의하는 방법으로 보좌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 피고인 김석균(전 해양경찰청장)

- (1) 중앙구조본부의 역할이 일사불란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지역구조본부와 광역구조본부가 세월호와 교신을 설정하였는지, 교신을 통해 세월호의 침몰상태, 승객 대피 현황 등 현장 상황, 즉, ① 다치거나, 사망한 승객이 있는지, ② 가장 구조

가 시급한 승객이 누구이고 어디에 있는지, ③ 나머지 승객은 몇 명이고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 ④ 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⑤ 퇴선 준비 또는 퇴선지시가 내려져 승객들이 갑판 등 비상대피 장소에 나와 있거나 바다에 떠 있는 상태인지, ⑥ 어디로 접근해야 가장 신속하게 많은 승객을 구조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총괄적으로 파악하여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거의 무한책임을 진다

- (2) 피고인 김석균은 09:05경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로부터 세월호 침몰 사고를 보고받은 시점에서 세월호 선수를 남겨놓고 침몰한 당일 10:30분까지 수난구조대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도 하지 않았고, 광역·지역구조본부를 지휘·통제하여 최악을 상황을 전제로 한 구조지휘 업무를 하지 않았다.

3. 세월호 현장검증의 필요성

- (1) 피고인들이 그 임무에 상응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승객들에게 비상대기 갑판으로 탈출하도록 지시하였으면 승객들이 모두 구조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선내 탈출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
- (2) 세월호가 인양된 후 바로 세워졌으므로, 세월호에 승선한 승객들이 탈출할 수 있는 탈출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졌음
- (3) 세월호의 기울기에 따라 비상대기 갑판으로 이동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그 당시 승객들은 대기명령에 따라 구명조끼를 입고 질서정연하게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비상대기 갑판으로 이동하는데 어렵지 않았을 것이고, 비상대기 갑판으로 탈출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거나, 퇴선명령이 있었다면 승객들은 생존할 수 있었음.
- (4) 답은 현장에 있다는 오래된 말이 있고, 진실을 찾는 과정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할 수도 있으며, 희생자 가족에게 아픔을 줄 수 있음, 그런데도, 진실을 찾는 과정은 최선이 되어야 함, 그 결과로 판결의 수용성을 높아짐